

# 「2025년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 (시제품제작·개선지원) 농산업체 모집 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표준기반 스마트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역사업인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지원’ 사업에 참여할 농산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농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

## 1. 공고 개요

### □ 사업목적

- 스마트팜 관련 농산업체의 시제품 제작과 제품 개선을 통해 국가 표준이 적용된 ICT기자재의 현장 보급 및 확산 지원
- 국내 농축산업 현장의 표준화 제품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구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 품목을 중심으로 실증 지원

### □ 사업비: 1,710백만원(국비 50~70%)

### □ 지원 규모: 40社 내외

- (유형1) 표준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지원: 36社 내외
  - (유형2) 표준적용 기자재 실증 및 확산 지원: 4社 내외 \* 컨소시엄 가능
- 유형1, 유형2 신청 품목이 다를 시 중복지원 가능\*

\* 예) (유형1) 센서(온도, 습도, 토양) (유형2) 통합환경제어기 + 센서(일사, 풍향, 풍속)

지원내용	사업비(백만원)
① 표준적용 시제품 제작, 제품 개선: 36社 내외 * 지원기업 중 6社 선정 농가 판매형 실증 추가 지원	910
② 표준화 제품 실증 및 확산: 4社 내외 * 컨소시엄 가능	800
총 합계	1,710

- ※ 직접지원을 받는 농산업체는 컨설팅·검정바우처 참여 필수(선정 후 별도 안내)
- ※ 선정된 농산업체는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 및 대표규격 적용 필수
- ※ 표준제정 시점 반영 및 현장보급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발 조정될 수 있음
- ※ 실증 완료 시 (참고) 농산업체-농가 실증 조사표 작성하여 제출

#### □ 사업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25년 10월 31일(금) \* 사업 추진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

#### □ 공고 및 접수 기간

- '25. 1. 20.(월) ~ '25. 2. 13.(목) 15:00까지

#### □ 사업추진체계

구 분	주체	역 할
보조사업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국가표준확산지원사업 총괄관리, 보조운영기관 및 농산업체 선정
보조운영기관	간접보조사업자	농산업체 협약 및 관리, 컨설팅 수행, 현장실사, 회계 교육 및 관리
참여기업*	농산업체 (유형2: 컨소시엄 가능)	시제품 제작과 제품개선 지원, 검정·표준적합성, 실증·확산 사업수행 및 회계정산

- \* 선정된 농산업체 및 컨소시엄은 보조운영기관과 협약하여 사업추진
- \* 컨소시엄 유형 예시: 농산업체 1社 ↔ 농가 / 다수 농산업체 ↔ 농가

□ 추진절차 및 일정안내

<b>모집공고</b>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사업공고
↓		
<b>신청서 접수</b>	(농산업체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신청서류 접수
↓		
<b>서류/발표평가/현장</b>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농산업체, 평가위원회)	자격요건, 제출서류 미비여부 서류, 발표평가, 현장(필요시)
↓		
<b>사업계획서 보완 및 제출</b>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과제내용 및 예산 심의·조정 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농산업체 → 간접보조사업자)
↓		
<b>협약체결</b>	(간접보조사업자 ↔ 농산업체)	사업수행 협약체결
↓		
<b>사업승인 및 1차 사업비 지급</b>	(간접보조사업자 ↔ 농산업체)	사업 지원금 60% 집행
↓		
<b>사업 추진</b>	(간접보조사업자, 농산업체)	농산업체, 컨소시엄별 사업수행
↓		
<b>사업 운영 및 관리</b>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사용현황 상시 점검 등 관리
↓		
<b>중간보고 및 점검</b>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간접보조사업자 ← 농산업체)	중간 추진실적, 예산 집행 현황 점검 및 보고
↓		
<b>2차 사업비 지급</b>	(간접보조사업자 ↔ 농산업체)	사업 지원금 40% 집행
↓		
<b>최종평가</b>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간접보조사업자 ← 농산업체)	추진실적 최종 평가 및 집행예산 검토·정산

## 2. 지원대상 및 내용

※ 사업 지원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유형1]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지원

#### □ 사업개요

- (목적) 국가표준 적용 기자재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지원
- (대상) 국내 스마트팜 ICT 기자재 제품 제조기업 및 제조 예정기업

#### □ 지원 내용 및 조건

- 스마트팜 ICT 기자재의 국가표준에 해당하는 ICT 기자재 시제품 제작 개선 및 제품 개선하는 농산업체 지원 \* 지원기준 참고
- 지원업체: 36社 내외
- 지원금액: 최대 4,000만원(국비 70%, 자부담 30%)  
\* 농가 판매형 실증 시 2,00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 규모 \*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분야	지원기준	모집(社)	지원금액(만원)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시설원예 축산	통합환경제어기	10	4,000
		양액기	10	3,000
		센서	6	
		구동기	6	
		사양관리기	4	

\* 추가 지원금 대상 : 농가 판매형 실증에 지원하여 선정된 농산업체

\*\* 농가 판매형 실증 : 시제품 제작·검정·실증+농가 판매까지 수행하는 지원사업

\*\*\* 농가 판매형 실증 참여 시 [서식5] 국가표준 ICT기자재 구매확약서 작성·제출

※ 단일품목(센서류·구동기)으로 지원 신청 시 최소 3종 이상 제작 및 개선해야 함  
예) 센서류의 경우 : (지원불가) 온도 3종, (지원가능) 온도·습도·일사

#### ○ 지원 대상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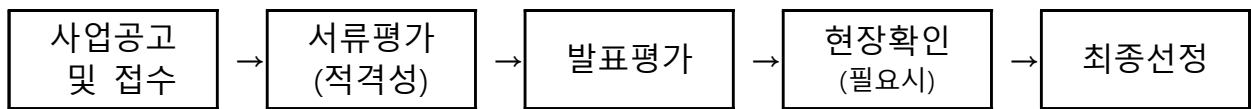
분야	대상표준
시설원예	국가표준 KS X 3265 ~ 3267, 3288, KS B 7955, 7958*
축산	국가표준 KS X 3279, KS B 7956-1~4

\* 지원 대상 표준은 검정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모 자격

구분	내용
기업	- 지원 대상 표준 제품 제조 기업 및 제조 예정 기업 * 단, 제조 예정기업은 관련 제품 및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20~'24년 사업 참여기업은 기 개선품목(상세) 외에 한해서 신청가능 * 단, '20~'24년 참여기업은 기 개선제품(상세)에 대해 검정(표준적합성)을 완료 후 지원가능. 검정결과 중지 부적합은 기준 미충족으로 판단함

□ 평가 절차



□ 지원 품목

분야	품목	상세 내역
시설 원예	구동기	천창, 측창, 보온덮개, 차광막, 환풍기, 유동 팬, 관수 모터, 관수 밸브, 냉난방기
	센서	온도, 습도, CO <sub>2</sub> , 일사, 풍향, 풍속, 감우, 광양자, 토양 함수율, 토양 수분 장력, EC, pH, 지온
	양액기	양액공급기(양액공급장치 정보)
	통신	구동기 및 센서 복합노드, 통합제어기
축산	센서	기온, 습도, CO <sub>2</sub> , 암모니아, <b>조도</b> , 산소, <b>차압</b> , 풍속, 풍향, 강우, 일사, <b>일조</b> , 정전, <b>누전</b> , 아크, <b>낙뢰보호기</b>
	사양관리기기	자동급이기, <b>송아지자동포유기</b> , 스마트원유냉각기, 체중계, 잔량측정 사료빈, 자동체중선별기, 음수관리기, 파각란검출기, 계란선별기
	통신	구동기 및 센서 복합노드, <b>생체정보수집장치</b> , <b>영상수집장치</b>

\*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과 'e-나라 표준인증(<https://standard.go.kr>)'에서 국가표준 문서를 확인할 수 있음

\*\* **적색표기**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검정 불가 항목으로 표준적합성만 확인 가능

## [유형2] 표준적용 기자재 실증 및 확산지원

### □ 사업개요

- (목적) 국가표준 적용된 ICT 기자재의 실증을 통한 시장진입 및 현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
- (대상) 국내 스마트팜 제품·제조 기업 및 농가

### □ 지원 내용 및 조건

- 국가표준이 적용된 ICT기자재 제품의 확산
  - 통합환경제어기를 필수 지원하고, 참여 농가 요구 및 환경에 따라 연계품목(센서, 구동기, 양액기) 등 추가 지원
- 지원업체: 4社 컨소시엄 \* 참여농가는 25호 이상으로 구성
- 지원 규모: 컨소시엄 당 최대 400백만원

분야	지원기종	지원금액	지원 비율
시설원예	(필수)통합환경제어기 + 연계기종	400백만원/ 지원대상	국비 50% / 자부담 50% (기업 30% + 농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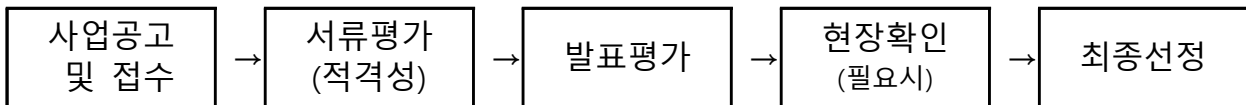
### □ 지원 기종

구분		기종
<b>필수</b>	통합환경제어	통합환경제어기
연계 기종	구동기(9종)	천창, 측창, 보온재, 커튼, 환풍기, 유동팬, 관수 모터, 관수 밸브, 냉난방기
	센서(13종)	온도, 습도, 지온, CO <sub>2</sub> , 토양EC, 토양pH, 토양수분, 토양수분장력, 일사량, 풍향, 풍속, 감우, 광량
	양액기(1종)	양액공급기

□ 응모 자격

구분	내용
기업	- 검정과 표준적합성 평가를 완료한 스마트팜 ICT기자재를 보유하면서, 해당 기종을 사업기간 내 정상적으로 농가에 확산 가능한 기업
농가	-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농업 활동을 수행 중인 농가

□ 평가 절차



□ 중요재산 등록 및 사후관리의 의무

- 본 사업으로 확산된 제품은 중요재산 등록 후 사후관리 대상
- 확산된 제품은 5년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지원목적 외 사용, 양도, 판매, 훼손 등 행위 불가
  - ※ 설치 후 기업이 e나라도움 시스템에 중요재산을 직접 등록
  - 제품 소유자(권리자)는 참여 농가로 등록

< 중요재산 등록 및 사후관리 관련 근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일부 발취)
<p><b>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b>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별표 4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여야 한다.</p>
<p><b>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b>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또는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b>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별표 4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p>
<p><b>[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b>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로 분류되어 중요재산 등록과 5년간 사후관리 필요</p>

### 3. 신청방법 및 절차

#### ◆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확산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반드시 사업책임자의 아이디로 국가표준확산지원 홈페이지(<https://smartfarm-standard.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 절차】

▲ 홈페이지 접속 → ▲ 로그인 → ▲ 사업공고 → ▲ 사업신청 → ▲ 사업신청 바로가기  
→ ▲ 신청내용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 최종 접수 확인/제출

- **접수기간: 2025.2.13.(목) 15:00까지** \* 접수기한 이후 시스템 접속 불가
  -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접수 등록 권장
  - ※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 시 접수 불인정

####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사업책임자의 직인 및 서명해야 함
- 제출서류 누락,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평가 전에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신청 시 유의사항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유사한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타 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본 사업 선발 이후 타 정부 지원사업의 참가는 해당사업의 중복수혜 가이드라인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다음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신청지원 기업 제외 항목】**

- 기업의 부도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유형1	유형2	내용
1	사업신청서	필수	필수	[서식 1] 참고, 직인 날인 후 PDF 형식으로 제출
2	사업계획서	필수	필수	[서식 2] 참고
3	서약서	필수	필수	[서식 3] 참고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필수	[서식 4] 참고
5	(유형1) 국가표준 ICT기자재 구매확약서 (유형2) 사업 참여 확약서	필수*	필수	[서식 5] 참고 * (유형1) 농가 판매형 연계의 경우 필수
6	농산업체-농가 실증 조사표	-	-	[참고] 농산업체-농가 실증 조사표 양식
7	검정성적서 (표준검정 성적서)	선택	필수	검정과 표준적합성 성적서 ※ '20년~'24년 해당사업 참여 기업의 경우 필수
8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필수	필수	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내 발급한 것)
9	최근 3개년 재무제표	필수	필수	설립일이 3년 미만인 경우 가능 범위 내 제출 당해 설립 기업은 '개시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으로 대체
10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필수	필수	최근 3개월 이내 증명서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11	4대보험 가입증명원	필수	필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1인 기업의 경우, 면제)
12	재직자 교육 수료증	선택	선택	국가표준확산지원사업의 재직자교육 수료증만 해당(최대 3개과목)

## 4. 선정평가

### □ 평가 개요

- 지원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종합적 평가(적격성·발표)를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
-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사업계획, 사업수행역량, 경영안정성 및 사업관리 방안 등에 대해 검토

#### 【평가 제외】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중 일부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한 자로 처분된 경우 등

### □ 평가방법 및 기준

- (서류 적격성 검토) 지원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의 자격요건에 대한 적격성 여부 검토

\* 신청서류 누락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경영안정성 등을 확인

구분	항목	배점
수행계획서 완성도	- 공고·응모 절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사업목적과 수행계획서의 부합여부 확인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 여부 확인 - 제출된 서류의 모든 필수 기재사항 여부 확인	적/부
제출서류 확인	- 필수 증빙, 제출자료 확인	적/부

- (발표평가) 지원기업의 사업수행계획서,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타당성, 충실성, 기업의 인프라,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발

구분	내용	배점
지원내용의 타당성	- 제품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도에 대한 구체성 -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20
지원계획의 충실성	- 지원사업의 목표 및 수행내용의 구체성 - 추진체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및 체계(검정 등 포함) - 실증·판매·확산 계획 내용의 구체성	40
기업의 인프라	- 기술 관련 특허, 산업재산권, 국가인증 보유 여부 - 생산시설 및 설비 보유 여부 등의 시설현황 - 기존 기술 대비 차별화된 기술력 보유 여부 - 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전문 인력 보유 여부	10
제품 및 표준화 실현 가능성	- 표준화 제품 생산 계획의 구체성 - 표준화 제품 판로계획 및 기대효과의 구체성 * 스마트팜 국가표준 적용 제품의 판매실적 있을 시 기재 - 표준 스마트팜 확산 비용의 적정성과 실행 가능 여부 - 설치조건 및 유지보수 등 운영 지속 가능 여부	30

- 발표평가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총점 70점 이상기준으로 동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따름

\* 최종점수가 동점인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재검토 후 결정

○ (현장확인) 발표평가 후 평가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제출 내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확인 추진

구분	항목	배점
시설	- 제출 서류 일치 여부 · 주소, 시설(공장), 인력 등 서류 일치 여부 파악	적/부
인력	- 인력 현황 일치 여부 · 전체 근무자 수, 사업 투입 인력 역할·책임분담 등	적/부
제품	- 표준 적용·검정적격 및 확산기자재 보유 현황 · 표준 적용 성능시험 성적서, 확산제품(실물, 개수) 등	적/부
	- 과거 판매내역 및 제품, 서비스 기능 · 세금계산서 및 판매 내역 참고 관재시설·서비스 모니터링 가능 여부, 장비 시연 등 확인	적/부

## □ 선정평가 절차

서류평가 (적격성 검토)	발표평가 (대면)	현장확인 (필요시)	최종선정
(1~2월)	(2월 중순)	(2월 말)	(2월 말)
· 자격요건 확인 · 신청서류 누락여부 · 기타 적정성 등 검토	· 지원타당성, 구체성 · 구성 적정성 · 제품의 시장성 등	· 시설(주소, 공장 등) · 인력(근무자 수 등) · 제품(보유, 판매 등)	· 최종점수 등을 반영하여 고득점순 선정, 협상· 협약

<b>사업 공고</b>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사업공고
↓		
<b>사업 접수</b>	(농산업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모 참가신청서, 예비 사업수행계획서 등 접수
↓		
<b>평가위원회 구성</b>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간접보조사업자)	지원사업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 <b>발표평가 : 품목별, 내외부 구성</b>
↓		
<b>서류평가</b>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자격요건 확인, 신청서류 누락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 요건, 기타 적정성 등 검토 * <b>미비서류 보완요청 가능</b>
↓		
<b>발표평가</b>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간접보조사업자)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타당성, 구체성, 시장성,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등
↓		
<b>현장확인(필요시)</b>	(간접보조사업자 ↔ 농산업체)	평가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현장 점검 및 확인 추진
↓		
<b>사업계획서 평가·심의·조정</b>	(농산업체)	농산업체 사업수행계획의 평가(발표, 현장 등)결과와 의견 내용에 대해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예산 심의·조정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 고려)
↓		
<b>최종결과</b>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간접보조사업자)	평가위원회의 최종선정 결과 보고
↓		
<b>선정결과 통보</b>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간접보조사업자, 농산업체)	농산업체, 컨소시엄 최종선정 통보 * <b>평가의견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협약</b>

※ 선정대상자 포기 및 허위사실 확인 시 후순위 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사업비 범위 내 지원기업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5.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

- 2025년도 지원사업 선정 시 발표평가 점수에 최대 3점 가산
  - '23~'24년 스마트팜 재직자교육 수료자 대상(수료 과목당 1점)

## 6. 유의사항

- 지원사업에 응모하는 농산업체의 사업책임자는 사업자등록증내의 소속 직원이어야 함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농산업체 선정평가 일정 및 결과는 개별통지(전자메일 등)하며,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책임자에게 있음
-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 초과,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등은 응모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최종 선정된 농산업체는 간접보조사업과 과업 이행 내용, 일정 등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완료해야 함
- 최종 선정된 사업자와 과업 이행 내용, 일정 등을 협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표준적용 기자재 실증 및 확산지원(유형2)의 경우, 최종선정 후 민간 자부담은 사업비 계좌에 사전입금하며, 참여농가별 이체확인증(농가 → 사업비 계좌)을 협약 전 증빙해야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확산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기관)에 있음
-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이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수행 및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7. 행정사항

- 지원사업에 응모된 사업계획서는 평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 발표평가 시 사업담당부서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탈락될 수 있으며, 탈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책임자는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평가일정 미공지 등 평가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선정된 농산업체는 사업수행 시 보조운영기관이 지정한 외부회계기관을 통해 상시 및 정기(중간, 최종 등) 회계정산점검을 받아야함

## 8.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스마트농업진흥팀	063-919-1717, 1727, 1728